의안번호	제 2011 - 19호
의 결 연 월 일	2011. 10. 24. (제5차 임시회의)

보고안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목 차

I. 제43차 전체회의 ····· 1

1. 일시·장소 ····· 1

2. 참석자 ····· 1

3. 주요 안건 ····· 1

4. 회의 요지 ····· 1

가. 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1

나. 폭력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4

다. 성범죄 양형기준 보완 방안 검토 ····· 7

II. 향후 일정 ····· 10

별첨 정준화, “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10. 17.)”

김혜정, “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에 대한 의견(10. 17.)”

홍준호, “폭력범죄 양형기준 검토”

강우예,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검토의견”

최동렬, “성범죄 양형기준 보완 방안 검토”

심재철, 조석영,

“성범죄 양형기준 혁신 방안-권고형량범위 산정 관련”

“성범죄 관련 범죄유형 및 양형인자 수정 방안”

“성범죄 관련 집행유예 기준 개선안”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이유 및 이탈사유 기재 권고안 의결 제안”

김혜정, “성폭력범죄 양형기준 보완 방안에 대한 의견”

Ⅰ. 제43차 전체회의

1. 일시·장소

○ 일시 : 2011. 10. 17.(월) 16:00 ~ 21: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12명)

○ 수석전문위원, 강우예, 범현, 심재철, 이수정, 이정훈, 이주원, 정준화, 조석영, 최진녕, 홍준호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폭력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성범죄 양형기준 보완 방안 검토

4. 회의 요지

가. 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1)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 교통방해범죄와 도로교통법위반범죄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데 이견이 없음

(2) 유형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

○ ① 일반 교통사고, ② 교통사고 후 도주로 대유형을 분류한 후,

①유형은 (i) 교통사고 치상, (ii) 교통사고 치사의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②유형은 (i)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 (ii) 교통사고 치상 후 유기도주, (iii) 교통사고 치사 후 도주, (iv) 교통사고 치사 후 유기도주의 세부 유형으로 분류하는 데 의견이 일치함

○ 영역별 권고 형량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교통사고 후 도주유형의 제4유형(치사 후 유기도주) 중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보다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상한 또는 하한을 높이거나 1.5배 또는 2배 가중의 서술식 기준을 두거나 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 교통사고 치사 후 유기도주의 법정형이 살인죄와 동일한데, 과실범에 후속된 유기도주죄의 형량범위를 고의범인 살인죄 제1유형의 형량범위보다 높이거나 형량범위 가중의 서술식 기준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와 법정형이 동일하고, 실무상 구분하기도 용이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가중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 논의 결과, 영역별 권고 형량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데 이견이 없음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치상 후 유기도주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3	치사 후 도주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4	치사 후 유기도주	3년 - 5년	3년6월 - 6년	5년 - 8년

(3) 양형인자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양형인자 반영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인 경우,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형량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 ‘위험운전치사상인 경우’와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자는 의견
-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이므로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음주운전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 음주운전의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음주운전 1개만 해당하더라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
-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각 독립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자는 의견

☞ 논의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가중인자로 반영하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함

☞ 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제8호 또는 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 음주측정 요구불응인 경우

-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는 유형분류(교통사고 후 도주범죄)에서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양형인자에서는 제외함 ☞ 일반가중인자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를 양형인자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중상해'를 특별가중인자로,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로, '경미한 상해'를 일반감경인자로 반영(다수 의견)
-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로, '경미한 상해'를 일반감경인자로 반영(소수 의견)

○ 특별감경인자인 '도주 후 잘못을 뉘우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스스로 현장에 복귀한 경우', 특별가중인자인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일반감경인자인 '소극 가담'을 양형인자표에서 삭제하는 데 이견이 없음

나. 폭력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1) 유형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

○ '공동 상해'를 별도의 가중적인 유형으로 분리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데 의견이 일치함

○ '보복 목적 상해'를 별도 가중유형으로 분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별도의 유형으로 분리하지 않고, 가중인자로만 반영하자는 의견(다수 의견)
- 별도의 가중적인 유형으로 분리하여 설정하자는 의견(소수 의견)
- '보복 목적 상해'를 제2유형(중상해)으로 분류하자는 의견(소수 의견)

☞ 논의결과, '보복 목적 상해'는 별도의 가중적인 유형으로 분리하여 설정하지 않고, 양형인자표에서 특별가중인자로만 반영하는 데 의견이 일치함

○ 상습·누범·특수상해의 유형분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됨

[1안] 상해범죄를 하나의 형량기준표로 구성하는 방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	중상해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4	상습·누범·특수상해			

[2안] 상해범죄를 두 개의 형량기준표로 구성하는 방안

1.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	중상해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 상습·누범·특수상해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상습·누범·특수상해			

☞ 논의결과, [1안]과 [2안]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무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적정한 안을 제시하기로 하는 데 의견이 일치함

(2) 양형인자

○ 상해범죄가 공무집행방해범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인 경우의 양형인자 반영 여부 및 방법과 관련하여, 당초 1-1안, 1-2안, 2-1안, 2-2안, 2-3안, 2-4안, 2-5안이 제시되었으나, 논의 결과 다음 표와 같이 2-4안과 2-5안의 2개 안으로 압축됨

방안	처리방안	논거
2-4안 (소수의견)	○ 공집방 :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유지 ○ 상해 : '공무집행방해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 ※각 양형기준 적용하여 도출된 형량범위 중 높은 하한을 권고 형량범위 하한으로 참조	○ 상상적 경합범죄가 중요한 양형인자로 작용함에도 양 범죄의 양형인자표에서 모두 배제하면 적정하지 않은 형량범위 제시하게 되어 부당 ○ 앞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상호 교차적으로 양형인자에 반영함이 타당 ○ 장기적으로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도 형량범위 하한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면, 상상적 경합범과의 불균형 문제는 해결될 것임
2-5안 (다수의견)	○ 공집방 :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인자 삭제 ○ 상해 : '공무집행방해한 경우'를 가중인자로 반영× ※각 양형기준 적용하여 도출된 형량범위 중 높은 하한을 권고 형량범위 하한으로 참조	○ 상습·누범상해, 상해치사와의 상상적 경합 등 수많은 형태의 상상적 경합을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인자표에 반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 다양한 상상적 경합 중 유독 공무집행방해와 일반 상해 상호간에서만 양형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일관성 결여 ○ 일정 범위의 형량구간 형태로 권고형량 제시되고, 양형인자표에 열거되지 않은 양형요소도 일반양형인자로 고려할 수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의 적정 형량 선택에 큰 문제 없음

		○ 2-4안에 의할 경우, 상상적 경합범의 형량범위 하한이 실체적 경합범의 하한보다 가중되게 되어 불합리함

○ 기타 양형인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잔혹한 범행수법’,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 휴대 범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 대상 범죄’와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을 분리하여 독립적인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 살인죄와 달리 상해죄에 있어서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별로 많지 않아서 별도의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굳이 반영한다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또는 범행수법’으로 포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실제 잔혹한 범행수법에 의한 상해인 경우 살인미수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에 해당하지 않는 잔혹한 범행수법이라면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공동상해인 경우’를 별도의 가중적 유형으로 분리하지 않는 대신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야 법정형이 가중되는 것을 반영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를 일반가중인자로 바꾸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

다. 성범죄 양형기준 보완 방안 검토

(1) 공개토론회, 설문조사 실시 여부

○ 장애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양형 및 양형기준에 관하여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고, 공개토론회 및 설문조사가 시의적절한 방안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음

(2)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심의안건 제출 여부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영화 '도가니'가 제기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 관련 쟁점,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의 개정 전망 등을 성범죄 양형기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내용의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의 건'을 양형위원회 제5차 임시회의(10. 24.)에 제출하는 데 이견이 없음

○ 위 심의안건에서, 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유형분류, 형량범위, 양형인자) 수정방안의 검토, ②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개선방안 검토, ③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이유 및 이탈이유 기재 권고안 의결 제안(양형이유 기재 명확화·구체화 방안)'의 논의 여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추가로 제시됨

- 성범죄의 법정형은 이미 상당히 높아졌고 오히려 너무 높아서 문제인 경우도 있는데, 다만 가끔씩 납득할 수 없는 형량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일부 판결로 인하여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므로 그러한 판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형량만 계속 높이고 양형을 통제하기 위한 도식화 경향으로 흐르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도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 형사재판이나 양형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의 정도 또는 등급에 따라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을 구분해서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위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양형인자의 가중치 단위에 따라 유형별 출발 형량범위를 가중·감경하는 방안'의 논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장기적 과제로서 '양형인자의 가중치 단위에 따라 각 유형별 출발 형량범위를 가중·감경하는 방안'도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이에 대하여, 현행 양형기준의 기본틀과 완전히 다른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
- 영화 '도가니'의 실제 사건은 개정 법률 및 양형기준의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임에도, 현행 법률 및 양형기준을 그 사건에 적용할 경우의 형량범위를 기초로 당해 사건의 양형을 평가하는 것은 일반인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부적절하다는 의견
- 1기 양형위원회에서 공개토론회 및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행 양형기준 방식이 결정된 것인데, 그 당시 채택되지 않은 방안과 유사한 방식을 재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전과를 가로축으로 삼지 않았고, 모든 범죄를 통합한 격자식이 아니므로 1기 양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제시된 방안과 다르다는 의견

○ 위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이유 및 이탈이유 기재 권고안 의결 제안'의 논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이유 및 이탈사유 기재 권고안 의결 제안'도 추가로 심의안건에 포함시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이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난 경우에 판결서에 기재해야 하는 '양형의 이유'는 '이탈사유'가 아니라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이유'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양형위원회가 이에 배치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
-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사건의 판결문에서 예외 없이 항소이

유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기재되는 것인데, “항소심이 양형 통제 기능으로서 사실상 역할이 없음”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 양형위원회 제5차 임시회의(10. 24.)에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의 건’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할 사항과 범위를 결정하면, 그에 따라 전문위원단에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하기로 하는 데 의견이 일치함

Ⅱ. 향후 일정

○ 전문위원 제44차 전체회의는 10. 24. 09:30에, 제45차 전체회의는 11. 14. 14:00에 개최하기로 함